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무궁화캐피탈(주)

2. 조치일 : 2026. 7. 22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 관	과태료 72백만원
임 원	주의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·공시 의무 위반
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)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'기준금액'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①신용공여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②분기별*로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*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

무궁화캐피탈(주)은 2021. 9. 30.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(유)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인 대출 57억원을 취급하였으나, 동 ①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, ②이후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차례에 걸쳐 동 대출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.

< 관련법규 >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9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
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제19조의4
3. 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제5조의7
4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
5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
6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
7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